



## 1. 브루셀라 란?

브루셀라균이 오염된 사료, 물, 감염우의 젖 등의 섭취, 보균우와의 교배, 유산된 태어나 태반, 자궁배설물을 소가 핥거나 접촉할 경우, 피부의 상처, 결막 등으로 체내에 침투하여 감염되는 2종 법정 가축 전염병이다. 감염증상은 유산·조산, 불임, 유방염, 생식기관 및 태막염증, 고환염 등 감염축은 도살 후 매몰 또는 소각한다.

사람이 감염된 소의 생고기나 미살균 우유 섭취시 감염 가능(인수공통)하나 고기를 익혀 먹거나 우유를 살균 처리하여 섭취 할 경우 아무런 문제없다.

## 2. 방역 추진상황

젖소는 집유장에서 농장별 년 4회 정기검진(연간 94천건), 한·육우는 과거 발생지역 및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개체별 검진(연간 80천건)을 실시하고 있다. 브루셀라 발생농장의 소는 전두수 살처분 또는 감염축에 한해서 살처분하고 동거축은 도축장 출하, 각각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지급하며 역학조사결과, 반복 발생우려시 전두수 살처분, 발생농장의 입출입을 제한한다. 단, 30~60일간격 3차 검진후 이상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해제된다.



### 3. 발생동향 및 분석

한육우는 '03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그동안 감소 추세이던 젃소는 '04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년 도		'90	'00	'01	'02	'03	'04. 8말
전체	건수	274	271	131	110	172	375
	두수	356	1,249	754	845	1,088	2,407
젃소(건/두)		274/356	266/1,198	127/684	105/662	110/498	141/878
한우(건/두)			5/51	4/70	5/183	62/590	234/1,529

### 4. 가축시장 거래 소 검진결과

8월까지 4,592호(전체 한육우농가의 2.4%)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중에 80호에서 양성인 확인되었다.

년 도	검사신청		채 헐		검사실적		양성축 발생	
	8 월	누계	8 월	누계	8 월	누계	8 월	누계
농가수	1,218	4,632	1,175	4,605	1,174	4,592	17	80
가축두수	4,530	19,169	4,450	19,023	4,426	18,944	36	169

### 5. 한육우 브루셀라 방역 강화대책

'03.5부터 한육우 검사를 확대하고 다발지역·유사산 발생농가 및 가축시장 소래 소를 중심으로 검진하고 감염 확인 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 발생지역 30두이상 사육농가의 한우 50%이상을 검사하며 04'.5부터 가축시장 거래되는 1세이상 암소(도축용 제외)의 검사를 의무화 하며 거래시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감염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액의 100%까지, 장려금은 20~50만원/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검사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거래하여 감염 될

경우 보상 금액은 60%로 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의 살처분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염률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 정부는 조건부 예방접종을 하되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 및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시·도별 발생 및 검진결과 집계, 지속적으로 감염을 조사 분석하여 과거의 브루셀라 백신파동의 재발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6. 브루셀라병 발생원인 분석 ('03년~'04.6월 발생농가수 조사기준)

구분	합계	외부구입	인근전파	과거발생	원인미상	비고
합계	481 (100.0)	205 (42.6)	62 (12.9)	38 (7.9)	176 (36.6)	
한우	130 (100.0)	100 (76.9)	7 (5.4)	2 (1.5)	21 (16.2)	
젖소	351 (100.0)	105 (29.9)	55 (15.7)	36 (10.3)	155 (44.1)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브루셀라가 검사없이 외부로부터 구입한 소가 감염(77%)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

### 7. 가축시장 거래 소 검진증명서 휴대제 이행실태

거래시 검진증명서 휴대율은 7월이후 95%이상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검진증명서 휴대율〉

월	5월	6월	7월	8월
휴대율	9%	72%	94%	96%

※휴대대상(1세이상 한육우 암소 : 도축용 제외) : 출하두수의 9%



### 8. 증명서 휴대제도 시행동향

검진증명서를 첨부한 소의 가격이 10~30만원이상 상승하여 거래되며 일부에서는 1세이상 암소를 도축용으로 속여 증명서 휴대를 회피하는 사례로 인해 도축용 암소와 문전거래 소까지 검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때 가축시장 거래 소 검진증명서 휴대제는 조기에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 9. 향후 추진일정

추진 일정	추진 계획
'04.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발 시·군, 한육우 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실시(11~12월)</li> <li>○ 전화 문진 검사방법 시행(11~12월)</li> <li>○ 가축전염병예방방법시행규칙 개정 추진(11~12월)</li> <li>○ "살처분보상금및도태장려금지급요령"(고시) 개정(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차등기준</li> <li>- 도태장려금 현실화</li> </ul> </li> </ul>
'0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 대상에 도축용 암소 추가 등</li> </ul> </li> <li>○ "부루세라 검진우 가축시장 거래제시행지침"(지시) 보완 시달</li> <li>○ "부루세라병검사및검사증명서휴대명령"(안) 작성 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용 암소 검진, 미검진우 도축 제한 등</li> </ul> </li> </ul>
'05.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용 암소 검진 확대(계도기간)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시장 출하 1세 이상 모든 암소 + 문전거래 도축용 암소 대상 적용</li> </ul> </li> </ul>
'05.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용 암소 검진제도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제한 및 위반자 제재 강화 등</li> </ul> </li> </ul>